|  |  |  |
| --- | --- | --- |
|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제159호<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이 2014년4월8일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2014년 11월 13일**제1장 총칙**1.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및 기타 유해생물의 국내 반입되을 방지하며 농·림·목·어업 생산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입국, 출국 및 국경을 통과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 동물유전물질, 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생물재료 및 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제3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각자 관할지역 내의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제4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생산, 가공, 보관, 수출입하는 기업은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증해야 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장 위험 관리****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분석을 토대로 제품 위험등급 분류, 기업 분류, 검역 진입허가, 위험 경고 및 기타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한다.**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동물위생 및 공공위생 위험에 근거하여 제품의 위험등급을 확정한다. 제품의 위험등급 및 검역·감독 방식은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한다.**제7조** 검사·검역부서는 기업의 신용도, 품질안전 통제능력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 가공, 보관기업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해당 검사·검역·감독 조치를 취한다. **제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품질안전 현황, 검사·검역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국내외 관련 조직·기구의 통보사항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동물위생 및 공공안전 문제에 근거하여 위험 분석결과를 토대를 위험경고정보를 발표하고 긴급대비방안 가동 결정, 수출입 제한 또는 임시중단 등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한다.**제3장 입국 검사·검역****제1절 검역 진입허가****제9조** 국가질검총국은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해 제품위험 분석, 감독·관 리시스템 평가와 심사, 검사·검역 요구사항 확정, 해외생산기업 등록·등기 등을 포함한 검역 진입허가 제도를 실시한다.**제10조** 국가질검총국은 처음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제품위험 분석, 감독·관리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며; 과거에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거나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 중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한 회고적 심사를 실시한다.국가질검총국은 위험분석 결과, 평가·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협상 및 확정하고 관련 이국간협정을 협상·체결하거나 검사·검역증서를 확정한다. 국가질검총국은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입국을 허용하는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리스트와 제품 종류를 제정, 조정하여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한다.**제11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해외기업(이하 "해외 생산가공기업"으로 약칭)에 대해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한다.해외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하 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이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제2절 해외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제12조**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의 법률·법규 및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강제성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3조**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가 심사를 통해 합격한 업체를 국가질검총국에 추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의 추천서류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와의 협상 절차를 거쳐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회고적 심사를 실시하고 등록·등기를 신청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등록· 등기를 허가한다.**제14조** 해외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해외 생산가공기업의 등록·등기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가 유효기 만기 6개월 전에 국가질검 총국에 연기신청을 제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한 회고적 심사를 실시하고 연기를 신청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회고적 심사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연기신청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추출검사를 통과하였거나 추출검사에 당첨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제15조**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더 이상 중국으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는 이를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하고 국가질검총국은 그 등록·등기를 말소한다. **제16조**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검사·검역****제17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1) 양국간협의서, 협정서, 양해각서 및 기타 양국간협정에 의해 확정된 관련 요구사항.(2) 양국이 확인한 검사·검역증서에 규정 된 관련 요구사항.(3) 중국의 법률·법규의 규정과 강제성 표준의 요구사항.(4) 입국 동물·식물 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으로 약칭)에 열거된 요구사항.(5)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검사·검역 요구사항.**제18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검역 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제품 위험등급이 높은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 수출입항의 조건 제한 등 원인으로 지정 보관·가공장소(이하 "지정기업"으로 약칭)로 운송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허가증 수속 처리 시 지정기업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 또는 반입 시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검역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대외무역계약서, 영수증, 인수증,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검사·검역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역 심사비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제20조** 입국장의 검사·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역신고 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검역허가증의 허가물량(중량)을 정산(核銷)한다.증서 요구가 있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검역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거나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유효한 검사·검역증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반출 또는 소각처리한다. **제21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은 입국장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한다.입국장의 조건 제한 등 원인으로 국내로 반입된 후 지정기업으로 운송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입국장 검사·검역부서가 현장검사 실시 및 방역소독 조치를 취한 후 지정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한다.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검역허가증에 명시된 지정기업으로 운송한 후 지정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정기업 소재지의 검사·검역부서가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보관, 가공 과정에 대한 검역·감독을 실시한다.**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1) 출발시간, 항구, 경유국 또는 경유지역, 선적리스트 등을 심사하고 서류의 진실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며 화물의 명칭, 물량(중량),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포장, 라벨, 태그 등이 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검사한다.(2) 포장·용기의 온전성과 동물·식물성 포장 또는 매팅재료 휴대 여부 및 중국 관련 규정 부합 여부.(3) 부패·변질 여부와 유해생물, 동물 배설물 또는 기타 동물조직 등 휴대 여부. (4)동물 시체, 토양 및 기타 국내반입 금지물 휴대 여부. **제23조** 검사·검역부서는 현장검사 진행 시 운송용구의 관련 부위, 비식용성 동물 적재 용기, 포장 외관, 매팅재료, 오염장소 등에 대해 방역소독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현장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처리통보서>를 발 행하고 해당 검역조치를 취한다.(1) 법률·법규에 의해 국내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내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거나, 화물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심각한 부패·변질이 있는 제품은 반출 또는 소각처리한다.(2) 무포장 또는 용기가 파손된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온전한 조치를 취한 후 운송용구에서 하역이 가능하다. 검사·검역부 서는 오염된 장소, 물품, 용기를 소독처리한다.(3) 검역성 유해생물, 동물 배설물 또는 기타 동물조직을 휴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한다. 효율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반출 또는 소각처리한다.(4) 병원체 및 기타 유독·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봉인 후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현장을 소독처리한다.**제25조** 타 해관관서로 운송해야 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국내로 반입되기 전 또는 반입 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해야 하고 제품 별 요구사항에 따라 검역허가증 및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검사검역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입국장 검사·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반출 또는 소각처리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외면, 운송용구에 대해 방역소독 조치를 취한다. 화물이 통관지에 도착한 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통관지 검사·검역부서는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 및 검역·감독을 실시한다.**제26조** 검사·검역부서는 국가질검총국의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요구사항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채취증명서>를 발행하며 실험실에 의뢰하여 해당 항목의 검사를 진행한다.**제27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검사·검역에서 합격하고 검사·검역부서로부터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받은 후 판매, 사용하거나 지정기업에서 가공할 수 있다.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검사·검역 처리 통보서>를 발급받은 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검역부서의 감독하에 위해성 제거, 반출 또는 소각처리하며 위해성 제거 처리 후 검사·검역에서 합격한 제품은 입국을 허가한다. 대외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검사·검역부서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 품의 검사·검역 불합격 정보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제28조** 검사·검역부서의 사전동의 없이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운송용구에서 하역하거나 운송·배송해서는 아니된다.**제29조**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운송용구에서 하역 및 운송·배송하는 과정 중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용기, 포장의 파손으로 화물이 누출 또는 추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 지정기업으로 운송되어 검역을 받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은 검역허가증에 명시된 지정기업에서 보관, 가공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지정기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허가증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변경된 지정기업 소지재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하여 검사·검역 및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제31조**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환적하여 내륙지역으로 운송하려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홍콩 또는 마카오에 도착한 후 기존 운송용구에서 하역하여 홍콩·마카오의 육로, 수로를 통해 내륙지역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송화인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에 환적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내륙지역으로 운송해서는 아니된다.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는 국가질검 총국의 요구에 따라 환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한 화물에 봉인 표지를 부착하고 환적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입국장 검사·검역 부서는 검역신고 수리 시 환적검사증명서 및 기타 관련 검사·검역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제4절 감독·관리****제32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서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보관, 가공 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제도를 실시한다.**제33조** 위험등급이 비교적 높은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보관, 가공업무를 취급하 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직속 검사·검역국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공예제작 프로세스, 수의위생·방역제도 등을 검사·평가·심 사하고 보관·가공하고자 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종류와 보관·가공 능력을 평정한다.**제34조** 지정기업은 동물검역 및 수의위생· 방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의위생·방역제도의 규정에 따라 방역업무를 취급해야 한다.(2) 규정된 공예에 따라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가공, 사용해야 한다.(3)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4) 기업기록을 수립 및 유지하고 출입고, 생산가공, 방역·소독,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한다.(5) <수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 가공, 보관 지정기업 감독관리수첩>을 사실대로 기입한다.(6)안전·위생 관련 기타 규정.**제35조** 검사·검역부서는 이 방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지정기업은 요구에 따라 소재지 직속 검사· 검역국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보고서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6조** 검사·검역부서는 지정기업, 수화인 과 그 대리인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신용기록 양호기업 명단과 신용기록 불량기업 명단을 수립해야 한다.**제37조** 지정기업, 수화인과 그 대리인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 발병 및 공공위생 문제 발견 시 즉시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38조** 지정기업의 명칭, 주소지, 법정대 표인, 취급하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종류, 보관·생산·가공능력, 가공공예 및 기타 수의위생·방역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제39조** 검사·검역부서는 지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1)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2) 이 방법 제3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못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3)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속 2년간 비식용성 동물제품 보관, 가공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5) 이 방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제40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보관·가공기업 을 지정, 변경한 후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출국 검사·검역****제1절 출국 생산가공기업 등록·등기****제41조**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이 중국에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이하 "출국 생산가공기업"으로 약칭)에 대한 등록·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이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등록· 등기를 실시한다.**제42조**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법률·법규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법률·법규에 규정된 등록·등기 요구사항을 수립 및 유지해야 한다.(2) 수립된 수의위생·방역제도에 따라 생산활동을 취급해야 한다.(3) 수립된 합격원료공급상 평가제도에 따라 생산활동을 취급해야 한다.(4) 기업기록을 수립, 유지하여 원료,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5)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 보관 등록·등기기업 감독·관리 매뉴얼>을 사실대로 작성한다.(6) 중국의 기타 법률·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제43조**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등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각 3부)를 제출해야 한다.(1)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 보관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신청표>;(2) 공상영업집조 (복사본);(3)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4) 환경보호 요구사항과 연관된 경우 현급 또는 현급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발급한 환경보호 합격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5) 수의위생·방역제도;(6) 대문, 공장구역, 창고구역 전경을 포함한 공장 평면배치도 및 사진자료; 생산가공시설, 저장·보관시설, 방역·소독처리 시설, 폐기물·포장물·폐수처리시설 등의 사진;(7) 생산가공 온도, 사용하는 화학시제의 종류·농도·PH수치, 처리시간 및 설비 사용상황 등을 포함한 공정흐름도;(8) 중국의 기타 법률·법규에 규정된 관련 합격증명서류.**제4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1) 신청사항이 법에 정한 행정허가 취득이 필요없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2) 법에 따라 본 행정기관의 관할이 아닌 신청사항은 즉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기타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3) 신청서류에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인에게 일괄고지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에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5)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보정한 경우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직속 검사·검역국은 본 행정기관의 전용공인이 날인되고 일자가 기재된 신청 수리 또는 불수리의 서면증명을 발급해야 한다.**제45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 수리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심사팀을 구성 하여 등록·등기를 신청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현장 평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제46조** 평가심사팀은 현장 평가심사를 마친 후 적시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속 검사·검역국에 제출해야 한다.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제47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평가심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상황별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1) 평가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등기·등록을 허가하고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 보관·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증>(이하 "<등록·등 기증>"으로 약칭)을 발급하며 등록·등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2) 평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보관·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불승인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제48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기업 명단을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임의 추출 검사·평가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 주관부서에 추천하며 관련수속을 처리한다.**제49조** <등록·등기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제50조** 등록·등기된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제품종류, 보관·생산 가공능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등기를 허가한 직속 검사·검역국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보관기업 검사·검역 등록·등기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내용과 관련된 자료(각 3부)를 제출해야 한다.기업명칭, 법정대표인의 변경은 직속 검사·검역국이 관련서류를 심사한 후 직접 변경수속을 처리한다.제품종류 또는 생산능력의 변경은 직속 검사·검역국이 관련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심사를 실시한 후 평가심사를 통과한 경우 변경수속을 처리한다.기업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 수속을 재신청해야 한다.**제51조**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제52조** 검사·검역부서는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해 연도심사를 실시하고 연도 검사에서 합격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의 <등록·등 기증>(부본)에 연도심사에서 통과되었음을 기록한다.**제53조**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등록·등기 허가 시 의거했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등기 조건 및 요구사항을 더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 등록·등기를 철회한다. (1) 등록·등기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2) 연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3) 의거했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이해관계자 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해당 등록·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1) 직속 검사·검역국의 업무인력이 등록· 등기를 허가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태만을 행한 경우;(2) 등록·등기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직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3) 등록·등기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춝구 생산가공 기업의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5)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경우.출국 생산가공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경우 그 등록·등기를 취소해야 한다. **제55조**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법에 따라 등록·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 등록·등기의 유효기간 만기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3) 출국 생산가공기업이 생산중지, 생산전환, 도산 등의 원인으로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새산, 가공 또는 보관 업무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4) 등록·등기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었거나 <등록·등기증>이 취소된 경우;(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등기사항을 실시할 수 없게된 경우;(6)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제2절 검사·검역****제56조** 검사·검역부서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1) 양국간 협의서, 협정서, 양해각서 및 기타 양국간협정;(2)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검사·검역 요구사항;(3) 중국의 법률·법규, 강제성 표준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사항;(4) 무역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검역 요구사항.**제57조**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지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무역계약서/신용장, <등록·등기증>(복사본), 기업 내부 검사·통제 합격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검역신고를 수리한다.**제58조** 검역신고 수리 후 검사·검역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한다.(1) 화물과 증명서류 대조확인 : 증명서류와 화물의 명칭, 수량(중량), 생산일자, 로트번호, 포장, 라벨, 출국 생산가공기업의 명칭 또는 <등록·등기증> 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한다.(2) 샘플 채취 : 해당 표준,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채취증명서>를 발급한다.(3) 관능검사 : 포장·용기의 온전 여부, 외관, 깔색, 조직상태, 점도, 냄새, 이물질, 이색(異色) 및 기타 관련항목.**제59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 추가 실시가 필요한 제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한다.**제60조** 검사·검역을 통과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출국화물 통관서> 또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명서>, 검사검역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효율적인 처리조치를 취한 후 다시 실시한 검사·검역을 통과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무효한 방법으로 처리하였거나 처리조치를 취한 후 다시 실시한 검사·검역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외반출을 불허하고 <출국화물 불합격 통보서>를 발급한다.**제61조** 입국항 검사·검역부서는 출국화물 증서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증명서류 기재사항과 화물 실제상황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대조검사한다. 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생산지 검사·검역부서가 발급한 <출국화물 증서교체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전자통관의 방식으로 <출국화물 통관서>를 발급받는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통관을 불허한다.**제62조** 생산지 검사·검역부서와 수출항 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검사·검역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위생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감독·관리****제63조**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내부 검사·통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2) 수입국 또는 수입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출국상품을 생산해야 한다.(3) 검사·검역부서가 인정하는 수의위생·방역 제도에 따라 위생·방역업무를 진행해야 한다.(4) 출입고, 생산가공, 방역·소독, 폐기물 검역처리 등을 포함한 기업 기록파일을 유지보수하고 기록파일을 최소 2년간 보관한다.(5)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 보관 등록·등기기업 감독관리 매뉴얼>을 사실대로 작성한다.**제64조** 검사·검역부서는 관할구역 내의 등록·등기 허가를 득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감독·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의위생·방역제도 집행 상황;(2) 원부자재·완제품 검사·통제, 생산가공 과정 통제, 원자재 및 완제품의 출입고·생산· 가공기록 등을 포함한 기업 내부 검사·통제 시스템 운영 상황;(3) 안전·위생과 연관된 기타 관련내용;(4)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 생산·가공· 보관 등록·등기기업 감독관리 매뉴얼> 작성 상황.**제65조** 검사·검역부서는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신용기록 양호기업 명단과 신용기록 불량기업 명단을 수립해야 한다.**제66조**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에서 역병 또는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또는 기타 안전·위생문제가 검출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검사·검역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제67조** 등록·등기한 출국 생산가공기업은 관련제품이 오염되어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안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그가 수출한 제품이 국외에서 비식용성 동물제품 안전사건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24시간내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함과 더불어 통제조치를 취하여 불합격 제품의 지속적인 출고를 방지해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보고받은 후 24시간 내에 상급 부서를 통해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국경통과 검사·검역****제68조** 비식용성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화물 관리인은 화물운송장 또는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경통과 운송 노선을 서면방식으로 제출하여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제69조**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적재한 운송용구와 포장물, 적재용기는 온전해야 한다.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의 검사에서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누출·추락될 우환이 발견된 경우 운송인 또는 화물 관리인은 입국장 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밀봉조치를 취해야 하며 밀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국경통과를 불허한다.**제70조**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명단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국경통과가 가능하다.**제71조** 입국장 검사·검역부서는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서류를 심사하고 봉인표지를 부착함과 더불어 출국장 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한다. 출국장에 도착한 후 출국장 검사·검역부서가 기존 컨테이너·포장·봉인표지의 온전성을 확인한 후 출국을 허가한다.**제6장 법률책임****제7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으로 판매, 사용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7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출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74조** 법정 검사·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입국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법정 검사·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사용 또는 수출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불법으로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몰수하며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75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수화인, 송화인, 검역신고 대행기업 또는 검역신고인력이 법정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진실한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았거나 법정 검역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 상품 검사를 도피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5% 이상 2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검역신고 수속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수화인 도는 송화인이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 대행업체에 검역신고 위탁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은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인에게 처벌을 내린다.**제76조**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 화물통관서를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7조** 검사·검역부서가 채취한 샘플 또는 검사·검역부서의 검사에서 합격한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 교체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벌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식용성 동물제품 가치의 10% 이상 50%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검역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검역 심사비준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역신고한 비식용성 동물제품이 실제와 다른 경우.전항 제(2)호의 행위로 검역증명서류를 이미 취득한 경우 해당 검역증명서류를 취소한다.**제7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3,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검사·검역부서의 승인 없이 입국·출국·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운송 용구에서 하역하거나 운송·배송한 경우;(2) 국경통과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포장을 무단 제거하거나 동식물 검역 봉인표지 또는 마크를 무단 제거, 훼손한 경우.**제8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의 사정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처벌이 필요없을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중대한 동물역병을 유발한 경우;(2) 동식물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를 위조, 변조한 경우.**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위법소득을 취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법소득 3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등록·등기 또는 지정 절차 없이 등록·등기 또는 지정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생산, 가공, 보관한 경우;(2) 추출검사 대상에 해당되나 추출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을 무단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경우;(3) 위조, 변조된 동식물 검역증명서류, 인감, 마크, 봉인표지를 매매 또는 사용한 경우;(4) 위조, 변조된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주관부서의 검사·검역 증명서류를 매매 또는 사용한 경우;(5) 위조, 변조된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매매 또는 사용한 경우;(6) 검사·검역부서의 감독·관리를 거부하는 경우;(7)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8)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업 등록·등기 또는 지정 관리를 실시하는 비식용성 동물제품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을 무단 변경한 경우;(9) 입국 비식용성 동물 생산, 가공 과정에서 형성된 폐기물을 검역처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처치한 경우.**제82조** 등록·등기를 신청한 생산·가공· 보관기업이 진실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등기를 신청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등록·등기를 불허하며 경고처벌를 내릴 수 있다.등록·등기한 생산·가공·보관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등기 허가를 취득하여 위법소득을 취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법소득 3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83조**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검사·검역 결과를 조작하거나 직무태만으로 검사·검역증서의 발급을 지연시킨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제84조** 이 방법에서 비식용성 동물제품이라 함은 동물의 가죽, 털, 섬유, 뼈, 발굽, 뿔, 유지(油脂), 젤라틴, 표본, 공예품, 내장, 동물비료, 누에제품, 벌제품, 수산물, 유제품 등 인류 또는 동물이 직접 식용하지 않는 동물 부산물과 그 파생물, 가공품을 지칭한다.**제85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에 대해 위생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국경 위생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6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제87조** 이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부터 수출입 비식용성 동물제품 검사·검역 관리규정과 이 방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  | **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59号《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已经2014年4月8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2月1日起施行。局长2014年11月13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规范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工作，防止动物传染病、寄生虫病及其他有害生物传入传出国境，保护农、林、牧、渔业生产和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适用于进境、出境及过境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监督管理。动物源性饲料和饲料添加剂、动物遗传物质、动物源性生物材料及制品不适用本办法。**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工作。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负责所辖地区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工作。**第四条** 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和贸易企业应当依照法律法规和有关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对社会和公众负责，保证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质量安全，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第二章 风险管理****第五条** 国家质检总局对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实施风险管理，在风险分析的基础上，实施产品风险分级、企业分类、检疫准入、风险警示及其他风险管理措施。**第六条** 国家质检总局根据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动物卫生和公共卫生风险，确定产品风险级别。产品风险级别及检疫监督模式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第七条** 检验检疫部门根据企业诚信程度、质量安全控制能力等，对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实施分类管理，采取相应检验检疫监管措施。**第八条** 国家质检总局根据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质量安全形势、检验检疫中发现的问题、国内外相关组织机构的通报以及国内外发生的动物卫生和公共卫生问题，在风险分析的基础上发布风险警示信息并决定采取启动应急处置预案、限制进出境和暂停进出境等风险管理措施。**第三章 进境检验检疫****第一节 检疫准入****第九条** 国家质检总局对进境非食用动物产品实施检疫准入制度，包括产品风险分析、监管体系评估与审查、确定检验检疫要求、境外生产企业注册登记等。**第十条** 国家质检总局对首次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国家或者地区进行产品风险分析、监管体系评估，对曾经或者正在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国家或者地区的监管体系进行回顾性审查。根据风险分析、评估审查结果，国家质检总局与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协商确定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要求，并商签有关双边协定或者确定检验检疫证书。国家质检总局负责制定、调整并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允许进境非食用动物产品的国家或者地区名单以及产品种类。**第十一条** 国家质检总局对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境外生产、加工、存放企业（以下简称境外生产加工企业）实施注册登记制度。需要实施境外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的非食用动物产品名录由国家质检总局制定、调整并公布。**第二节 境外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第十二条** 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境外生产加工企业应当符合输出国家或者地区法律法规和标准的相关要求，并达到中国有关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的要求。**第十三条** 实施注册登记管理的非食用动物产品境外生产加工企业，经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审查合格后向国家质检总局推荐。国家质检总局收到推荐材料并经书面审查合格后，必要时经与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协商，派出专家到输出国家或者地区对其监管体系进行评估或者回顾性审查，对申请注册登记的境外生产加工企业进行检查。符合要求的国家或者地区的境外生产加工企业，经检查合格的予以注册登记。**第十四条** 境外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有效期为5年。需要延期的境外生产加工企业，由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在有效期届满6个月前向国家质检总局提出延期申请。国家质检总局可以派出专家到输出国家或者地区对其监管体系进行回顾性审查，并对申请延期的境外生产加工企业进行抽查。对回顾性审查符合要求的国家或者地区，抽查符合要求的及未被抽查的其他申请延期的境外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有效期延长5年。**第十五条** 注册登记的境外生产加工企业不再向中国输出非食用动物产品的，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应当通报国家质检总局，国家质检总局注销其注册登记。**第十六条** 注册登记的境外生产加工企业向中国输出的非食用动物产品经检验检疫不合格，情节严重的，国家质检总局可以撤销其注册登记。**第三节 检验检疫****第十七条** 进境非食用动物产品应当符合下列要求：（一）双边协议、议定书、备忘录以及其他双边协定确定的相关要求；（二）双方确认的检验检疫证书规定的相关要求；（三）中国法律法规规定和强制性标准要求；（四）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以下简称检疫许可证）列明的要求；（五）国家质检总局规定的其他检验检疫要求。**第十八条** 进境非食用动物产品需要办理检疫许可证的，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相关规定办理。产品风险级别较高的非食用动物产品，因口岸条件限制等原因，进境后应当运往指定的存放、加工场所（以下简称指定企业）检疫的，办理检疫许可证时，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明确指定企业并提供相应证明文件。**第十九条** 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在非食用动物产品进境前或者进境时向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报检，报检时应当提供原产地证书、贸易合同、发票、提单、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出具的检验检疫证书等单证，须办理检疫审批的应当提供检疫许可证。**第二十条** 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对货主或者其代理人报检时所提供的单证进行审核，并对检疫许可证的批准数（重）量进行核销。对有证书要求的产品，如无有效检疫许可证或者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出具的有效检验检疫证书的，作退回或者销毁处理。**第二十一条** 进境非食用动物产品，由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实施检验检疫。因口岸条件限制等原因，进境后应当运往指定企业检疫的非食用动物产品，由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实施现场查验和相应防疫消毒处理后，通知指定企业所在地检验检疫部门。货主或者其代理人将非食用动物产品运往检疫许可证列明的指定企业后，应当向指定企业所在地检验检疫部门申报，由指定企业所在地检验检疫部门实施检验检疫，并对存放、加工过程实施检疫监督。**第二十二条** 检验检疫部门按照以下要求对进境非食用动物产品实施现场查验：（一）查询启运时间、港口、途经国家或者地区、装载清单等，核对单证是否真实有效，单证与货物的名称、数（重）量、输出国家或者地区、包装、唛头、标记等是否相符；（二）包装、容器是否完好，是否带有动植物性包装、铺垫材料并符合我国相关规定；（三）有无腐败变质现象，有无携带有害生物、动物排泄物或者其他动物组织等；（四）有无携带动物尸体、土壤及其他禁止进境物。**第二十三条** 现场查验时，检验检疫部门应当对运输工具有关部位、装载非食用动物产品的容器、包装外表、铺垫材料、污染场地等进行防疫消毒处理。**第二十四条** 现场查验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部门签发《检验检疫处理通知书》，并作相应检疫处理：（一）属于法律法规禁止进境的、带有禁止进境物的、货证不符的、发现严重腐败变质的作退回或者销毁处理；（二）对散包、容器破裂的，由货主或者其代理人负责整理完好，方可卸离运输工具。检验检疫部门对受污染的场地、物品、器具进行消毒处理；（三）带有检疫性有害生物、动物排泄物或者其他动物组织等的, 按照有关规定进行检疫处理。不能有效处理的，作退回或者销毁处理；（四）对疑似受病原体和其它有毒有害物质污染的，封存有关货物并采样进行实验室检测，对有关污染现场进行消毒处理。**第二十五条** 转关的非食用动物产品，应当在进境前或者进境时由货主或者其代理人向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申报，根据产品的不同要求提供有效检疫许可证和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出具的检验检疫证书等单证。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对提供的单证进行书面审核。审核不合格的，作退回或者销毁处理。审核合格的，依据有关规定对装载非食用动物产品的集装箱体表、运输工具实施防疫消毒处理。货物到达结关地后，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向结关地检验检疫部门报检。结关地检验检疫部门对货物实施检验检疫和检疫监督。**第二十六条** 检验检疫部门按照国家质检总局对非食用动物产品的检验检疫要求抽取样品，出具《抽/采样凭证》，送实验室进行有关项目的检测。**第二十七条** 进境非食用动物产品经检验检疫合格，检验检疫部门签发《进境货物检验检疫证明》后，方可销售、使用或者在指定企业加工。经检验检疫不合格的，检验检疫部门签发《检验检疫处理通知书》，由货主或者其代理人在检验检疫部门的监督下，作除害、退回或者销毁处理，经除害处理合格的准予进境。需要对外索赔的，由检验检疫部门出具相关证书。检验检疫部门应当将进境非食用动物产品检验检疫不合格信息上报国家质检总局。**第二十八条** 未经检验检疫部门同意，不得将进境非食用动物产品卸离运输工具或者运递。**第二十九条** 进境非食用动物产品在从进境运输工具上卸离及运递过程中，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采取措施，防止货物的容器、包装破损而造成渗漏、散落。**第三十条** 运往指定企业检疫的非食用动物产品，应当在检疫许可证列明的指定企业存放、加工。因特殊原因，需要变更指定企业的，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办理检疫许可证变更，并向变更后的指定企业所在地检验检疫部门申报，接受检验检疫和检疫监督。**第三十一条** 经香港或者澳门转运的目的地为内地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在香港或者澳门卸离原运输工具并经港澳陆路、水路运输到内地的，发货人应当向国家质检总局指定的检验机构申请中转检验。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不得转运内地。指定的检验机构应当按照国家质检总局的要求开展中转检验，合格后加施封识并出具中转检验证书，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受理报检时应当同时核查中转检验证书和其它有关检验检疫单证。**第四节 监督管理****第三十二条** 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部门对进境非食用动物产品存放、加工过程，实施检疫监督制度。**第三十三条** 拟从事产品风险级别较高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存放、加工业务的企业可以向所在地直属检验检疫局提出指定申请。直属检验检疫局按照国家质检总局制定的有关要求，对申请企业的申请材料、工艺流程、兽医卫生防疫制度等进行检查评审，核定存放、加工非食用动物产品种类、能力。**第三十四条** 指定企业应当符合动物检疫和兽医防疫的规定，遵守下列要求：（一）按照规定的兽医卫生防疫制度开展防疫工作；（二）按照规定的工艺加工、使用进境非食用动物产品；（三）按照规定的方法对废弃物进行处理；（四）建立并维护企业档案，包括出入库、生产加工、防疫消毒、废弃物处理等记录，档案至少保留2年；（五）如实填写《进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指定企业监管手册》；（六）涉及安全卫生的其他规定。**第三十五条** 检验检疫部门按照本办法第三十四条的规定对指定企业实施日常监督管理。指定企业应当按照要求向所在地直属检验检疫局提交年度报告，确保其符合国家质检总局制定的有关要求。**第三十六条** 检验检疫部门应当建立指定企业、收货人及其代理人诚信档案，建立良好记录企业名单和不良记录企业名单。**第三十七条** 指定企业、收货人及其代理人发现重大动物疫情或者公共卫生问题时，应当立即向所在地检验检疫部门报告，检验检疫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处理并上报。**第三十八条** 指定企业名称、地址、法定代表人、进境非食用动物产品种类、存放、生产加工能力、加工工艺以及其他兽医卫生、防疫条件发生变化的，应当及时向所在地直属检验检疫局报告并办理变更手续。**第三十九条** 检验检疫部门发现指定企业出现以下情况的，取消指定：（一）企业依法终止的；（二）不符合本办法第三十四条规定，拒绝整改或者未整改合格的；（三）未提交年度报告的；（四）连续两年未从事进境非食用动物产品存放、加工业务的；（五）未按照本办法第三十八条规定办理变更手续的；（六）法律法规规定的应当取消指定的其他情形。**第四十条** 直属检验检疫局应当在完成存放、加工企业指定、变更后30日内，将相关信息上报国家质检总局备案。**第四章 出境检验检疫****第一节 出境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第四十一条** 输入国家或者地区要求中国对向其输出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以下简称出境生产加工企业）注册登记的，国家质检总局对出境生产加工企业实行注册登记。**第四十二条** 申请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应当符合进境国家或者地区的法律法规有关规定，并遵守下列要求：（一）建立并维持进境国家或者地区有关法律法规规定的注册登记要求；（二）按照建立的兽医卫生防疫制度组织生产；（三）按照建立的合格原料供应商评价制度组织生产；（四）建立并维护企业档案，确保原料、产品可追溯；（五）如实填写《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注册登记企业监管手册》；（六）符合中国其他法律法规规定的要求。**第四十三条** 出境生产加工企业应当向所在地直属检验检疫局申请注册登记。申请注册登记时，应当提交下列材料（一式三份）：（一）《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检验检疫注册登记申请表》；（二）工商营业执照(复印件)；（三）组织机构代码证书（复印件）；（四）涉及环保要求的，须提供县级或者县级以上环保部门出具的环保合格证明；（五）兽医卫生防疫制度；（六）厂区平面图及图片资料，包括大门、厂区、库区全景照片，有关生产加工设施、仓储设施、防疫消毒处理设施、废弃物、包装物及污水处理设施的照片等；（七）工艺流程图，包括生产、加工的温度、使用化学试剂的种类、浓度和pH值、处理的时间和使用的有关设备等情况；（八）中国其他法律法规规定的有关合格证明文件。**第四十四条** 直属检验检疫局对申请人提出的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行政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五）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申请。直属检验检疫局受理或者不予受理申请，应当出具加盖本行政机关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面凭证。**第四十五条** 直属检验检疫局应当在受理申请后10个工作日内组成评审组，对申请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进行现场评审。**第四十六条** 评审组应当在现场评审结束后及时向直属检验检疫局提交评审报告。评审所需时间应当书面告知申请人。**第四十七条** 直属检验检疫局收到评审报告后，应当在10个工作日内分别作出下列决定：（一）经评审合格的，予以注册登记，颁发《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检验检疫注册登记证》（以下简称《注册登记证》），自做出注册登记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送达申请人；（二）经评审不合格的，出具《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检验检疫注册登记未获批准通知书》。**第四十八条** 直属检验检疫局应当将准予注册登记企业名单上报国家质检总局。国家质检总局组织进行抽查评估，统一向进境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推荐并办理有关手续。**第四十九条** 《注册登记证》自颁发之日起生效，有效期5年。**第五十条** 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变更企业名称、法定代表人、产品种类、存放、生产加工能力等的，应当在变更后30日内向准予注册登记的直属检验检疫局提出书面申请，填写《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企业检验检疫注册登记申请表》，并提交与变更内容相关的资料（一式三份）。变更企业名称、法定代表人的，由直属检验检疫局审核有关资料后，直接办理变更手续。变更产品种类或者生产能力的，由直属检验检疫局审核有关资料并组织现场评审，评审合格后，办理变更手续。企业迁址的，应当重新向直属检验检疫局申请办理注册登记手续。**第五十一条** 获得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需要延续注册登记有效期的，应当在有效期届满3个月前按照本办法规定提出申请。**第五十二条** 检验检疫部门对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实施年审，年审合格的在《注册登记证》（副本）上加注年审合格记录。**第五十三条** 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发生下列情况之一，准予注册登记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达不到注册登记条件要求的，由直属检验检疫局撤回其注册登记：（一）注册登记内容发生变更，未办理变更手续的；（二）年审不合格的；（三）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其他重大变化的。**第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直属检验检疫局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其注册登记：（一）直属检验检疫局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注册登记的；（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注册登记的；（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注册登记的；（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出境生产加工企业准予注册登记的；（五）依法可以撤销注册登记的其他情形。出境生产加工企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注册登记的，应当予以撤销。**第五十五条** 出境生产加工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直属检验检疫局应当依法办理注册登记的注销手续：（一）注册登记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的；（二）出境生产加工企业依法终止的；（三）出境生产加工企业因停产、转产、倒闭等原因不再从事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或者存放业务的；（四）注册登记依法被撤销、撤回或者吊销的；（五）因不可抗力导致注册登记事项无法实施的；（六）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注册登记的其他情形。**第二节 检验检疫****第五十六条** 检验检疫部门按照下列要求对出境非食用动物产品实施检验检疫：（一）双边协议、议定书、备忘录和其他双边协定；（二）输入国家或者地区检验检疫要求；（三）中国法律法规、强制性标准和国家质检总局规定的检验检疫要求；（四）贸易合同或者信用证注明的检疫要求。**第五十七条** 非食用动物产品出境前，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向产地检验检疫部门报检，并提供贸易合同/信用证、《注册登记证》（复印件）、自检自控合格证明等相关单证。检验检疫部门对所提供的单证进行审核，符合要求的受理报检。**第五十八条** 受理报检后，检验检疫部门按照下列规定实施现场检验检疫：（一）核对货证：核对单证与货物的名称、数（重）量、生产日期、批号、包装、唛头、出境生产企业名称或者注册登记号等是否相符；（二）抽样：根据相应标准、输入国家或者地区的要求进行抽样，出具《抽/采样凭证》;（三）感官检查：包装、容器是否完好，外观、色泽、组织状态、黏度、气味、异物、异色及其它相关项目。**第五十九条** 检验检疫部门对需要进行实验室检验检疫的产品，按照相关规定，抽样送实验室检测。**第六十条** 经检验检疫合格的，检验检疫部门出具《出境货物通关单》或者《出境货物换证凭单》、检验检疫证书等相关证书。检验检疫不合格的，经有效方法处理并重新检验检疫合格的，可以按照规定出具相关单证，准予出境；无有效方法处理或者虽经处理重新检验检疫仍不合格的，不予出境，并出具《出境货物不合格通知单》。**第六十一条** 出境口岸检验检疫部门按照出境货物换证查验的相关规定查验，重点核查货证是否相符。查验合格的，凭产地检验检疫部门出具的《出境货物换证凭单》或者电子转单换发《出境货物通关单》；查验不合格的，不予放行。**第六十二条** 产地检验检疫部门与出境口岸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交流信息。在检验检疫过程中发现重大安全卫生问题，应当采取相应措施，并及时上报国家质检总局。**第三节 监督管理****第六十三条** 取得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应当遵守下列规定：（一）有效运行自检自控体系；（二）按照输入国家或者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生产出境产品；（三）按照检验检疫部门认可的兽医卫生防疫制度开展卫生防疫工作；（四）企业档案维护，包括出入库、生产加工、防疫消毒、废弃物检疫处理等记录，记录档案至少保留2年；（五）如实填写《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注册登记企业监管手册》。**第六十四条** 检验检疫部门对辖区内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实施日常监督管理，内容包括：（一）兽医卫生防疫制度的执行情况；（二）自检自控体系运行，包括原辅料、成品自检自控情况、生产加工过程控制、原料及成品出入库及生产、加工的记录等；（三）涉及安全卫生的其他有关内容；（四）《出境非食用动物产品生产、加工、存放注册登记企业监管手册》填写情况。**第六十五条** 检验检疫部门应当建立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诚信档案，建立良好记录企业名单和不良记录企业名单。**第六十六条** 出境非食用动物产品被检出疫病、有毒有害物质超标或者其他安全卫生问题的，检验检疫部门核实有关情况后，实施加严检验检疫监管措施。**第六十七条** 注册登记的出境生产加工企业发现相关产品可能受到污染并影响非食用动物产品安全，或者其出境产品在国外涉嫌引发非食用动物产品安全事件时，应当在24小时内报告所在地检验检疫部门，同时采取控制措施，防止不合格产品继续出厂。检验检疫部门接到报告后，应当于24小时内逐级上报至国家质检总局。**第五章 过境检验检疫****第六十八条** 运输非食用动物产品过境的，承运人或者押运人应当持货运单和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出具的证书，并书面提交过境运输路线，向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报检。**第六十九条** 装载过境非食用动物产品的运输工具和包装物、装载容器应当完好。经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检查，发现过境非食用动物产品存在途中散漏隐患的，承运人或者押运人应当按照口岸检验检疫部门的要求，采取密封措施；无法采取密封措施的，不准过境。**第七十条** 过境非食用动物产品的输出国家或者地区未被列入本办法第十条规定的名单的，应当获得国家质检总局的批准方可过境。**第七十一条** 过境的非食用动物产品，由进境口岸检验检疫部门查验单证，加施封识后放行，同时通知出境口岸检验检疫部门。到达出境口岸后，由出境口岸检验检疫部门确认原货柜、原包装、原封识完好后，允许出境。**第六章 法律责任****第七十二条** 违反本办法规定，擅自销售、使用未报检或者未经检验的属于法定检验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三条的规定没收违法所得，并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擅自出口未报检或者未经检验的属于法定检验的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没收违法所得，并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十四条** 销售、使用经法定检验、抽查检验不合格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或者出口经法定检验、抽查检验不合格的非食用动物产品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五条的规定责令停止销售、使用或者出口，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使用或者出口的非食用动物产品，并处没收销售、使用或者出口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等值以上3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十五条** 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收货人、发货人、代理报检企业或者报检人员不如实提供属于法定检验的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真实情况，取得检验检疫部门的有关证单，或者对法定检验的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不予报检，逃避进出口商品检验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六条第一款的规定没收违法所得，并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委托代理报检企业办理报检手续，未按照规定向代理报检企业提供所委托报检事项的真实情况，取得检验检疫部门的有关证单的，对委托人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第七十六条** 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检验证单、印章、标志、封识、货物通关单或者使用伪造、变造的检验证单、印章、标志、封识、货物通关单，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七条的规定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罚款。**第七十七条** 擅自调换检验检疫部门抽取的样品或者检验检疫部门检验合格的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八条的规定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处非食用动物产品货值金额10％以上50％以下罚款。**第七十八条** 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第五十九条的规定处5000元以下的罚款：（一）未报检或者未依法办理检疫审批手续或者未按检疫审批的规定执行的；（二）报检的非食用动物产品与实际不符的。有前款第（二）项所列行为，已取得检疫单证的，予以吊销。**第七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第六十条的规定处3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一）未经检验检疫部门批准，擅自将进境、出境、过境非食用动物产品卸离运输工具或者运递的；（二）擅自开拆过境非食用动物产品的包装，或者擅自开拆、损毁动植物检疫封识或者标志的。**第八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或者犯罪情节显著轻微依法不需要判处刑罚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第六十二条的规定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一）引起重大动植物疫情的；（二）伪造、变造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第八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部门处以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罚款：（一）未经注册登记或者指定擅自生产、加工、存放需要实施企业注册登记或者指定管理的非食用动物产品的；（二）擅自销售、使用或者出口应当经抽查检验而未经抽查检验的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的；（三）买卖或者使用伪造、变造的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四）买卖或者使用伪造、变造的输出国家或者地区主管部门检验检疫证明文件的；（五）买卖或者使用伪造、变造的其他相关证明文件的；（六）拒不接受检验检疫部门监督管理的；（七）未按照有关规定向指定企业所在地检验检疫部门申报的；（八）实施企业注册登记或者指定管理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未经批准，货主或者其代理人擅自变更生产、加工、存放企业的；（九）擅自处置未经检疫处理的进境非食用动物产品使用、加工过程中产生的废弃物的。**第八十二条** 申请注册登记的生产、加工、存放企业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注册登记的，检验检疫部门不予受理申请或者不予注册登记，并可以给予警告。经注册登记的生产、加工、存放企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注册登记的，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部门处以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罚款。**第八十三条** 检验检疫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故意刁难当事人的，徇私舞弊，伪造检验检疫结果的，或者玩忽职守，延误检验检疫出证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第八十四条** 本办法中非食用动物产品是指非直接供人类或者动物食用的动物副产品及其衍生物、加工品，如非直接供人类或者动物食用的动物皮张、毛类、纤维、骨、蹄、角、油脂、明胶、标本、工艺品、内脏、动物源性肥料、蚕产品、蜂产品、水产品、奶产品等。**第八十五条** 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应当实施卫生检疫的，按照国境卫生检疫法律法规的规定执行。**第八十六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第八十七条** 本办法自2015年2月1日起施行。自施行之日起，进出境非食用动物产品检验检疫管理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